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07
----------	-----

2016.6.23.(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양섭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16년 5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16년 6월 01일

라. 상정일자 : 2016년 6월 08일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양섭 의원)

가. 제안이유

○ 동 조례의 근거가 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관위원회 및 노후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 도로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 조항 신설(안 제6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는 준공연도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한 적용기준 마련(안 제18조)

3. 검토보고 요지(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오성일)

-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근거가 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관위원회 및 노후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 도로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경관법」에 따른 충청북도 경관위원회의 위원중 충청북도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제6조제5항 중 “제3항제3호부터 제8호”를 “제3항제3호부터 제9호”로 한다.

제4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산업시설용지 개발 등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준공연도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에서 정하는 녹지율(하한만 적용), 도로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구성) ① ~ ② (생 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p> <p>1. ~ 8. (생 략)</p> <p>(신 설)</p> <p>④ (생 략)</p> <p>⑤ 충청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u>제3항제3호</u>부터 <u>제8호</u>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p>	<p>제6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경관법」에 따른 충청북도경관위원회의 위원중 충청북도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u>제3항제3호</u> <u>부터 제9호</u>----- ----- -----.</p>

현 행	개 정 안
<p>제4장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및 건축사업 분양수익 결정</p> <p>(신 설)</p> <p>제18조(시행규칙)</p>	<p>제4장 산업시설용지 개발 등</p> <p>제18조(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준공연도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에서 정하는 녹지율(하한만 적용), 도로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제19조(시행규칙)</p>

관 계 법 령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1.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경관,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해당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경관법」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1명

2.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명

3. 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3명

4. 법 제6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2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7(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① 재생계획 수립권자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기준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준공 연도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

로을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의6제1호에 따른 재정비방식으로 시행되는 재생사업지구에는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2조제9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서 규정한 건축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을 포함하여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제39조의2에 해당하는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전체 면적 중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650호) 제14조(공공녹지·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산업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공공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 단, 유원지는 제외한다)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확보하여 한다.

산업단지규모별 녹지비율

구분	산업단지 규모	계획 기준	비고
녹지율	300만㎡ 이상	10% 이상 ~ 13% 미만	
	100만㎡ 이상~ 300만㎡ 미만	7.5% 이상 ~ 10% 미만	
	100만㎡ 미만	5% 이상 ~ 7.5% 미만	

산업단지규모별 도로면적 비율

구분	산업단지 규모	계획 기준	비고
도로율	100만㎡ 이상	10% 이상	
	100만㎡ 미만	8% 이상	